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정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99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정정순·정일영·윤준병

양기대 · 홍기원 · 이상직

이장섭・송옥주・천준호

소병철 · 기동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 생함.

이에,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 <u>할</u>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
		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
		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
		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
		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
		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u>수 있다.</u>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
		청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u>한다.</u>